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52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4. 1.

발의자 : 송석준 · 곽규택 · 박정하  
김선교 · 김성원 · 조경태  
박대출 · 최형두 · 성일종  
김미애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및 저축  
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. 하지만 2025년 12월  
31일이 일몰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하게 됨.  
하지만 어려운 농어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건대, 농어민 생활 안정  
을 위한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계속 부  
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  
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어민이 저축을 통한 생활안  
정을 모도하려는 것임(안 제87조의2).

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7조의2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) 농어민이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<u>2025년</u>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·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	<p>제87조의2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) ----- ----- ----- <u>2030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